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708
----------	------

발의연월일 : 2017. 4. 11.

발 의 자 : 김관영 · 권은희 · 이상돈
황주홍 · 김중로 · 신용현
김성식 · 정인화 · 윤영일
박주현 · 최도자 · 이동섭
김광수 · 이용주 · 이용호
박지원 · 이태규 · 김삼화
김종희 · 이찬열 · 주승용
유성엽 · 장병완 · 김수민
최경환^(국) · 오세정 의원
(2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거짓 정보임을 인지하면서도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기재해 유통시키는 가짜뉴스가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가짜뉴스는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방해하고, 선거를 국가 비전 및 정책 대결이 아니라 비방전으로 변질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가짜뉴스 등 거짓 정보를 유통시키지 못하게 하고, 발견하고도 삭제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촉진시키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76조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명예훼손 등”을 “명예훼손 및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해 이용자들이 오인하게 하는 정보 등”으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정보로”를 “정보 또는 거짓 정보로”로 한다.

제7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u>명예훼손</u>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p> <p>②·③ (생략)</p> <p>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u>정보</u>로 사생활 침해나 <u>명예훼손</u>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 ⑥ (생략)</p>	<p>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 -----<u>명예훼손 및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해 이용자들이 오인하게 하는 정보</u> 등-----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 ----- <u>정보 또는 거짓 정보</u>로----- ----- ----- ----- ----- ----- ----- ----- -----.</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의2. (생략)

<신설>

6의2. ~ 12. (생략)

② ~ ④ (생략)

제76조(과태료) ① -----

-----.

1. ~ 5의2. (현행과 같음)

6.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의2.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